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4
------------	----

제출년월일 : '99. 6. 18.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등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부분의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와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제5조의 선발 우선 순위와 제6조의 장학생의 정원으로 그 목적 달성을 충분하고,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삭제 (안 제3조제1항)
- 나. 장학생의 의무 조항은 선언적 조항으로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삭제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99년도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3차심의의 결사항
-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를 “통장의 자녀로서”로 하고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 ② (생략)</p>	<p>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p>	<p>< 삭제 ></p>